

要 約

1. 研究의 背景, 目的 및 範圍

가. 研究의 背景

- 건설사업은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자 등 다수 참여자의 상호 작용하에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해체라는 생애주기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을 특징으로 함.
- 그러나 건설사업장내의 기존 안전관리체제는 건설사업의 여러 단계 중 시공 단계에서만 부분적으로 기능하여,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안전관리체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나. 研究의 目的

- 사고예방의 기본원칙은 '안전조직,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대책의 선정 및 실시·평가'의 순환과정으로서, 안전관리 활동의 첫걸음은 안전관리체제의 확립에 있음.

- 따라서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접근방법도 '관리적 원인'으로서 안전관리체제와 안전전문가 역할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우선함.
- 따라서 제반 안전관리제도 중 가장 근간이 되는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안전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산업안전 교육제도는 최우선 과제가 됨.
-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반 안전관리제도 중 건설안전관리체제와 건설업관련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선진국(일본, 독일, 영국 및 미국)의 건설산업관련 산업안전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건설안전관리제도의 개선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건설안전제도의 개선과 전반적인 건설재해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음.

2. 安全管理制度의 意義와 建設業에서의 脆弱性

가. 安全管理制度의 意義

- 안전관리활동은 그 범주에 따라 정부, 공공단체, 민간단체, 사업장의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안전관리활동은 민간단체나 사업장의 안전관리활동에 선행함.
 - 상위 안전관리기능(주체:정부)은 하위 안전관리기능(주체:사업장)을 지배하며, 정부정책의 결함은 안전관리제도상의 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바, 안전관리제도는 개개 사업장의 안전관리활동의 상위 결함요인이 될 수 있음.

나. 建設業의 産業安全管理 脆弱性

1) 建設業의 特性和 建設災害 現況

○ 건설상품은 부동산성, 복잡성, 고비용, 고내구성, 공공성과 강한 사회적 규제 등을 기본 속성으로 하며, 이에 따라 건설업은 현지옥외생산, 개별주문생산, 생산과정의 비동시성, 빈번한 설계변경 등을 특징으로 함.

○ 건설현장 사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내포하고 있음.

- 공사현장의 종합적 성격으로 인한 사고의 다양성
- 대형장비의 사용과 지형적 여건에 따른 사고발생빈도 및 강도 측면에서의 중대성
-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공정에 따른 동시복합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단계의 연계성에 따른 사고원인의 지속성 등

2) 建設災害 發生推移와 經濟的 損失

<표 1> 건설업 산업재해 추이

(단위 : 명)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재해자수	33,691	37,102	42,302	36,255	26,129	24,271	22,542	19,785
사망자수	505	673	801	843	636	743	715	789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표 2> 건설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1996년 기준)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명)	재해자수 (명)	재해율 (천인율)	산업재해 사망자수(명)	산재보험 지급액(억원)
전산업 (%)	8,156,894 (100)	71,548 (100)	11.82	2,670 (100)	13,553 (100)
제조업 (%)	2,908,049 (35.7)	32,805 (45.8)	12.98	671 (25.1)	4,655 (34.4)
건설업 (%)	2,453,953 (30.1)	19,785 (27.6)	12.27	789 (29.6)	5,388 (39.8)

자료 : 취업자수 - 통계청 통계조사국 자료

산업재해통계 - 노동부, 「'96산업재해분석」, 1997. 12.

3) 建設工事의 事故 危險性 增加

- 최근의 建設공사 추세는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과 기존 建設구조물의 노후화 및 현대화 요구에 따른 建設공사의 양적 증가, 공사규모의 대형화, 建設물의 기능향상 요구에 따른 공사 내용의 복잡화·고층화와 지하공간 활용증대에 따른 굴착심도의 증가 등 공사 내용의 질적 변화, 도심, 연약지반, 지하, 해상, 공중 등 建設현장 입지의 무한 확장에 따른 공사조건의 열악화 등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음.
- 또한 좁은 국토의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도심지 지하공간 활용증대로 도시기반시설의 고밀도화와 기존 지하매설물과 인접한 굴착작업은 증가일로에 있어 建設공사현장의 사고위험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에 의한 영향도 최근의 대구지하철 사고와 같이 단순한 공사현장 내의 사고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희생되는 대형 공중재해로 발전하고 있음.
- 일반산업과 비교한 建設업의 재해율은 세계적으로 일반산업의 2~3배 수준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계수치상의 오류를 보정한다면 일반산업에 비해 3배 이상 위험도가 높은 산업임.
- 최근 산업재해가 발생한 建設업체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建設업체 내부의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산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공상 등으로 처리하여 산재발생 보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産業安全保健法上的 建設安全管理制度

가. 主要한 建設安全管理制度

○ 산안법상의 주요한 안전관리제도는 다음의 10가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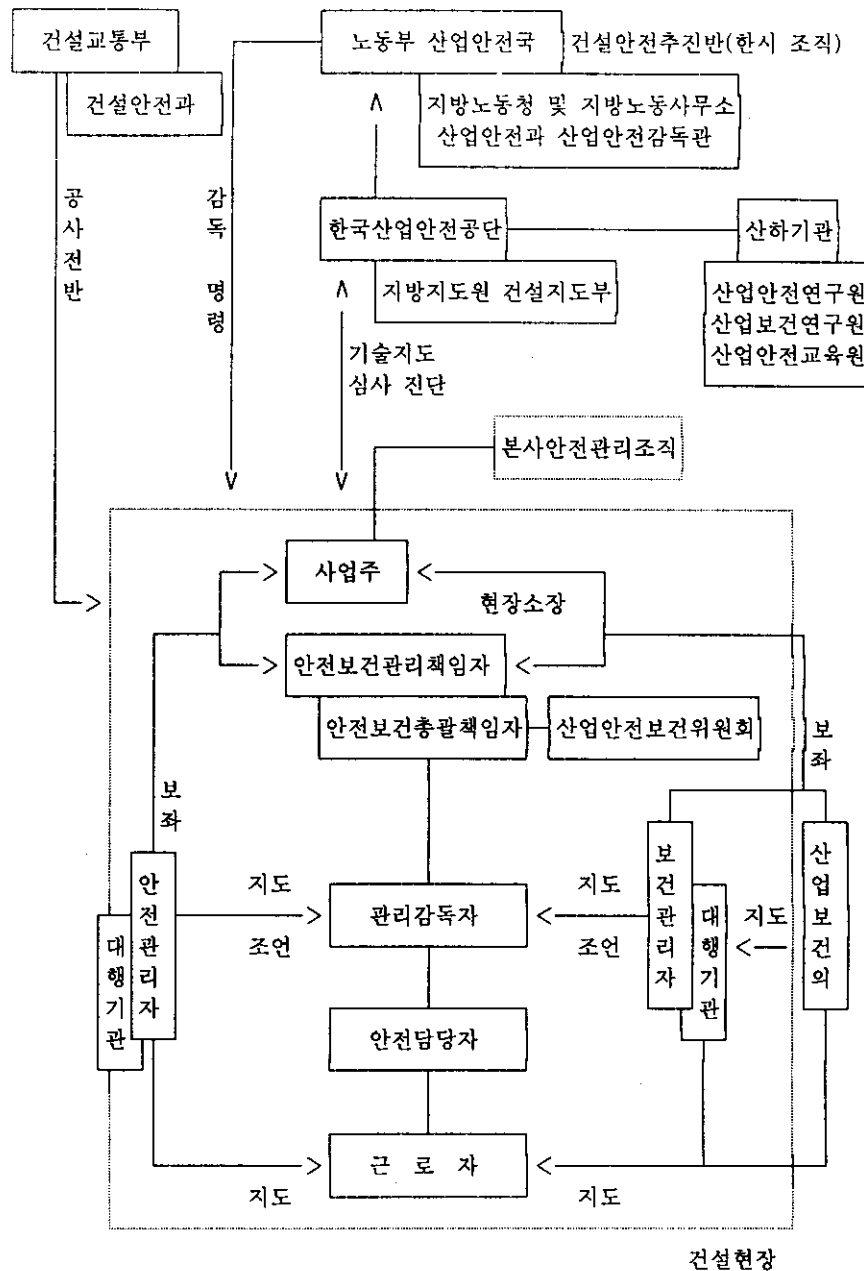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조직제도(13조~19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제도(20조~22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도
- 도급사업(혼재작업)의 안전보건제도
- 안전보건교육제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제도
- 작업환경관리와 건강진단제도
- 산업재해예방기금제도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역할 제도

○ 이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도는 건설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근로자 대표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워 안전관리제도 중 가장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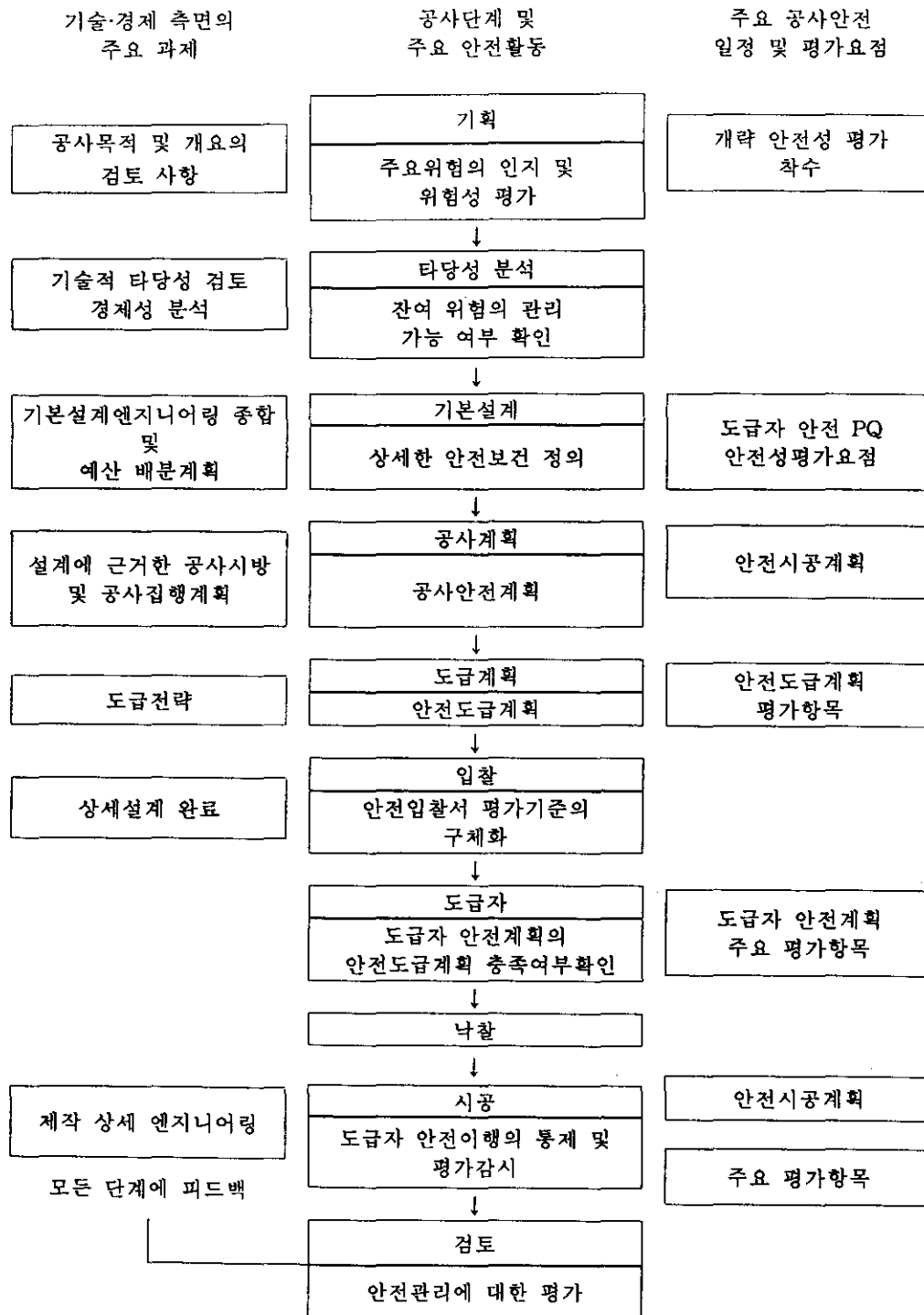
○ 안전조직제도도 건설공사 참여자의 다양성과 건설회사의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의 한계로 인하여 서류상으로만 선임이 되는 등 제조사업장에 비하여 한계가 많이 지적되고 있음.

○ 이밖에 건설업에만 관련된 제도로는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법제30조)'이 있으며, 이 제도는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에서 제조업에도 확대 실시를 추진중에 있음.

[그림 1] 건설업의 안전관리체제



[그림 2] 건설공사의 단계별 주요 과제 및 안전활동



나. 産安法上 建設安全管理制度 改善方向

- 건설공사 안전확보의 전제는 발주단계부터 건전한 수주질서에 의한 적절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여기에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전수준의 향상이 가능함.
- 이러한 맥락에서 건설안전의 당면과제도 일시적 점검이나 감독 등에 의한 단기적 성과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차원에서 사고의 근원인 '관리상 결함'의 제거를 위한 건설안전관리제도 개선에 의의가 있음.
- 제도개선의 순서는 건설공사의 수행방식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관리체제의 구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개선된 안전관리체제를 다른 안전관리제도 운용의 도구로 삼음으로써 다른 안전관리제도의 성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임.
- 개선의 기본방향은 우선적으로 기존의 제조업 지향의 안전관리방식을 건설공사 지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근원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모든 안전활동의 근간이 되는 안전관리체제 측면에서는 건설공사의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포함하는 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른 건설안전관리제도도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建設關聯法上の 建設産業安全管理制度

가. 建設業 安全關聯法令의 種類 및 所管部處

- 건설업 안전관리 관련법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그 종류가 7개 부서, 36여 종에 달하며, 이 중
-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노동부에서 관리하며,
 - 설계, 시공과 최종 품질에 관한 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도로법, 상수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
 -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보전에 관한 법등 환경보전관리는 환경처등 각 부분에서 관리되어지고 있음.

<표 3> 건설업 안전관련법령의 종류 및 소관부처

부 처 별	법 규 및 기 준
노 동 부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노동부고시, 예규 등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 도로법, 하천법, 상·하수도법 - 중기관리법, 도시계획법 - 공사표준시방서 및 기준 등 - 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재 무 부	- 예산회계법
내 무 부	- 소방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 도로교통법, 풍수해대책법
동 자 부	-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광산보안법
환 경 처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공 진 청	- 공업표준화법, 계량법, 공산품품질관리법

나. 建設關係法規 中 安全施工 規定

<표 4> 건설관계 법규상 안전시공규정

관 계 법	안 전 시 공 규 정	근 거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절차 ○설계심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설공사 책임감리 ○건설공사 감독 ○시공평가 ○설계 및 시공 기준 ○건설기술인력 관리	○법 제21조, 영 제36~38조 ○법 제23조, 영 제39조 ○법 제24조, 영 제40~46조 ○령 제46조의2 ○법 제27~33조, 영 제49조의2~54조의5 ○법 제35~41조, 영 제56조 ○법 제36조, 영 제57~59조 ○법 제34조, 영 제55조 ○법 제6조, 영 제6~8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 진단, 유지관리	○법 제1조~제44조
건설업법	○건설기술자 배치 ○하도급의 제한 ○하도급 계열회사 ○건설업자 실태조사 ○영업정지 ○건설업의 면허취소	○법 제33조, 영 제36조 ○법 제22조, 영 제36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영 제47조 ○법 제50조, 영 제49조 ○법 제52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 ○사용검사 ○주택건설사업자의 시공제한 등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주택의 감리 ○주택자재의 품질 ○주택조합의 설립 - 재건축조합의 노후·불량한 주택의 철거시 안전진단 실시 ○보고, 검사	○제31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42조 ○제44조 ○제49조

수 도 법	○수질기준 ○시설기준 ○공사기술자	○법 제4조 ○법 제5조 ○법 제15조
하 수 도 법	○설치기준 ○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배수시설의 설치 ○하수의 수질과 량	○법 제15조 ○법 제16조 ○법 제24조 ○영 제17조
건 축 법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대지의 안전 등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정리 ○구조내력 ○대규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내화벽 ○건축물의 내화구조 ○거실의 채광의 환기 ○피뢰설비 ○승강기 ○비상급수 설비 ○피난시설 및 소화시설비 등의 기준 ○건자재의 품질 ○도로 및 건축선 ○지구 및 지구내 건축물의 제한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재해구역 내에서의 건축제한 ○가설물 ○표지의 설치 ○공사 현장의 위해방지	○법 제6조 ○법 제9조 ○법 제9조의2 ○법 제10조 ○법 제11조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18조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2조의2 ○법 제23조 ○법 제25조 ○법 제27~31조 ○법 제32~38조 ○법 제39~41조 ○법 제46조 ○법 제47조 ○법 제50조 ○법 제51조
풍수해대책법	○하천 관리상태 점검 ○방지예방 ○재해응급대책	○영 제34조의2 ○법 제21~24조 ○법 제25조~40조
도 시 계획법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법 제16조, 영 제12조
도 로 법	○도로의 구조 등의 기준	○법 제39조
하 천 법	○댐 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법 제38조

다. 建設關聯 主要法令上の 安全施工規定

<표 5> 건교부 법규상 안전관련 항목 및 내용

법령	안전관련 항목 및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 제3조 (기본이념) · 제6조 (건설산업 진흥기본 계획의 수립)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 환경 및 품질대책수립 · 제7조 (건설관련 주체의 책무) -건설공사품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법령준수 및 업무수행 ·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 제41조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 · 제81조 (시정명령등) · 제82조 (영업정지등) · 제93조 (벌칙) - 시행령 제 31 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표준안전관리비 지급
건설기술관리법 (45조)	· 제2조 (정의) -건설안전에서 산안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제26조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구체사항은 건설교통부령) · 제28조 4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 제33조 (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안전관리 지도, 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 제36조 17 (시정명령)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때 · 제 41 조 (벌칙) - 시행령 (총 63개 조항) · 제7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 제29조 (건설기술연구 개발계획의 구성) ⇒안전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제46조 2, 3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제51조 2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등) · 제5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 · 제56조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 - 부칙 4 조 (시공중인 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규칙 (총 48개 조항) ·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 제21조 (건설안전점검 전문기관) · 제21조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 제21조 3 (안전관리계획서) · 제21조 4 (안전관리비 계상)

5. 建設業 下都給構造에 內在한 産業安全 脆弱點

가. 問題의 提起

- 建設業의 生産물은 거대성·종합성 등의 特性을 지니고 있어 그 生産구조도 다양한 公衆 및 公정에 따라 전문화된 개별기업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복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하도급 生産체제라 불리는 이러한 구조가 전문화된 합리적 分業체제에 기반하는 한 개별기업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生産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生産구조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에서 볼 수 있는 하도급 구조는 효율성 제고의 수준을 지나쳐 미시적으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합리적·효율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거시적으로 社会적인 차원에서는 非합리적·낭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
- 우리나라 경우 소수의 元청과 다수의 하청기업간에 합리적 하도급 단계를 넘어서 中층적 하도급 구조가 발생하고 있음.
 - 建設근로자 및 建設生産물과 관련된 建設산업 안전상의 문제점은 이윤수취의 하도급 고리가 中층화될수록 그 위험도를 높여가게 됨.
 - 따라서 建設산업 안전의 제고를 위해서는 산재사고 및 不實공사에 대한 벌칙조항의 강화같은 사후적·단편적인 改善策만으로는 不흡하며, 建設관련제도의 전반적인 改善과 함께 직접 공사비의 不當한 감소를 초래하는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改善할 수 있는 綜合적인 대책이 必要함.

나. 建設業 中層의 下都給構造의 概念과 發生 原因

- 廣의의 하도급이란 대자본이 중소자본 또는 소생산자를 자신의 직·간접적인 통제하에 두면서 그 생산과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하위 수준으로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함.
 - 건설하도급은 개별공사마다 공사의 일부 공정을 타건설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시공에 대하여 계약시 약정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종결되는 단기적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이루어짐.
- 건설업 하도급 구조의 발생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음.
 - 먼저 합리적 또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수준까지의 하도급 구조 측면인데 이는 일반산업과 달리 건설업에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생산 측면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그 수준을 넘어 불합리적이고 낭비적인 수준까지로 지나치게 중층화된 구조 측면이 있는데 바로 이 점이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생산과 무관한 비용의 유출 등으로 실공사비를 축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다. 建設業 下都給構造가 産業安全上의 問題를 惹起하는 메커니즘

- (1) i번째 건설업자(심장 포함)의 전체하도급액 구성 요소 : 비용함수 포함

$$T_i = \{ \Pi_{i1} + (W + K) \times D + M + C \} + (\Pi_{i2} + T_j), i \neq j$$

- (2) i번째 건설업자(심장 포함)의 총이윤 창출메커니즘 : 이윤함수

$$\Pi_i = \Pi_{i1} + \Pi_{i2} = T_i - \{ (W + K) \times D + M + C \} + T_j, i \neq j$$

T_i : i번째 건설업자가 수령한 전체하도급액, $i = 1 \cdots n$.

Π_i : i번째 건설업자가 도급을 통해 수취한 총이윤, $i = 1 \cdots n$.

Π_{i1} : i번째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을 통해 수취한 이윤, $i = 1 \cdots n$.

W :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평균 1일 임금총액

K : 임대된 기계장비 등에 지불되는 1일 평균 임대료
D : 근로자 및 기계장비 투입일수(근로자 및 기계장비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
M : 자재비
C : 기타 경비(임금, 기계장비 임대료, 자재비 이외의 총경비)
 Π_{i2} : 재하도급에 따른 i번째 건설업자의 재하도급이윤
 T_j : 건설업자 j에 대한 재하도급액, $j = 1 \cdots n-1$.

- 비용함수가 포함된 식 (1)과 이윤함수를 표시하는 식 (2)에서 건설업자는 조절이 가능한 항목의 비용절감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 함.
 - 먼저 i번째 건설업자에게 전체하도급액(T_i)은 하도급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상 i-1번째 건설업자(상위하도급자)에 의해 이미 결정되므로 조절가능한 항목이 아님.
 - 직접 시공하는 부분의 항목을 살펴보면 임금(W)과 기계장비 등의 임대료(K)는 이미 시장에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며, 자재비(M) 역시 시장에서 결정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표준자재 이하의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그 비용을 절감하는 경향이 나타남.
 - 기타 경비(C)에는 실제의 부대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에서 언급했던 리베이트 및 관청 등에의 사례비 등이 계상되어 표면상 건설업자의 조절 가능 항목으로 비치나 우리의 현실상 고정비와 같은 성격을 띠므로써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조절폭이 작다고 느끼고 있음.
 - 따라서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서의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근로자 및 기계장비의 투입일수(D)를 단축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 한편 재하도급을 주는 부분에서는 상위도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업자 j에 대한 재하도급액을 삭감함으로써 재하도급이윤(Π_{i2})을 증대시키게 됨.
- 이상의 이윤창출 방식이 n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도급의 단계마다 건설업자는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직접 시공에 의한 이윤(Π_{i1})과 재하도급을 통한 이윤(Π_{i2})을 보다 크게 수취하려 할 것이고 하위도급자에게 도달하는 전체 하도급액(T_j)은 직접 시공비 이하로까지 잠식당하게 될 것임.

- n번째 건설업자(일반적으로는 심장)는 '원도금액 $\times 0.8^n$ '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만을 지급받게 되고 또한 더 이상 재하도급을 통한 이윤(Π_{i2})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공기단축(D)과 불량자재에 의한 자재비 절감(M)을 통해서 직접 시공비 이하의 하도급액을 보전할 수밖에 없어짐.
- 이러한 메커니즘이 부실시공 및 산재발생과 직결되어 나타남.

- 산재발생이나 부실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을 무리한 공기단축, 표준자재 이하의 재료에 의한 시공, 설계의 변경 등 생산 내부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을 강요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도급의 비효율적인 중층화에 따른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실공사와 무관한 하도급대금의 누출 등 생산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라. 實工事費를 蠶食하는 建設下都給去來의 類型과 實態

- 면허를 소지하고 도급구조에 진입하는 공식부문과 공식적인 면허나 절차를 결여한 채 위장직영이나 면허대여 등으로 진입하는 비공식부문으로 구성되며, 이 둘을 합할 경우 하도급 비율은 대략 5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음.
- 하도급 수주 및 입찰단계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가능성을 더해 주고 있음.
- 산재발생과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실공사비의 잠식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예가 위장직영, 무면허업자에 대한 하도급, 이중계약,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등 불법 및 저가하도급 거래임.
- 불법 및 저가하도급에 의하여 감액된 하도급대금은 그 지급절차를 통해 또 다시 잠식당하게 되는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의 문제는 주로 선급금의 지급 지연, 장기어음에 의한 지급, 어음할인을 미지급, 기성검사 지연 등의 방

법을 통해 이루어짐.

6. 日本의 建設産業安全關聯制度

가. 産業安全保健法制의 特徵

-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법령은 「노동안전위생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령과 유사한 점이 많음.
-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령의 법제상의 특징이라면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오래되어
 - 법령의 개정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시에 좀더 신중을 기한다는 것과
 - 법령에 5년마다 주기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가능케하고 있다는 점임.
- 또한 법령의 제·개정에 신중한 만큼 법령의 준수도가 높은 반면, 구미의 법령에 비해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정부의 사업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인력은 비교적 충분한 편으로서 제재의 강도도 높아서 건설업체의 관리자의 말을 빌리면 사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회사의 생존을 염려해야 할 정도라고 함.
- 일본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해예방활동은 중앙노동재해방

지협회와 건설업재해방지협회 등 민간단체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활용하고 있음.

- 이는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의 전신이 본문에서 기술한 '단체법'이라는 사실은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민간단체를 육성하여 산재예방의 역할을 민간단체에 부여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민간단체의 규모나 역할이 출연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순수한 민간단체로 나누어진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해 더욱 조직적인 민간차원의 안전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사례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단체의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적극적인 활용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나. 政府의 規制 및 監督

○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조직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음.

○ 일본·정부도 기존의 건설재해 감소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임시부서로 우리나라의 건설안전추진반이라는 한시 조직과 유사한 건설안전대책실을 일본에서도 신설하여 건설재해의 적극적인 감소에 노력하고 있는 점도 비슷함.

○ 일본의 대부분 건설안전대책은 원청업자로부터 말단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현장종사자 전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의 조정이나 공사비의 적산 등 공사의 안전을 간접적으로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건설성에서 주도하고 있음.

다. 建設事業場の 安全管理體制

- 일본의 건설공사 수행방식도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건설사업장 내의 안전관리 체제도 유사한 점이 많음.
- 차이점이라면 일본에서는 공동도급이 발달하여 원도급자가 다수인 공사가 많으며, 대규모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현장의 수효가 많다 보니 일정구역의 다수현장을 통합관리하는 지사의 역할이 큰 편임.
- 따라서 건설재해 예방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법령을 개정할 때도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면서 지사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 공사착공 이전단계의 안전대책으로서 일본에서도 공사계획의 수립과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 안전관리체제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건설공사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주자나 건축주, 설계자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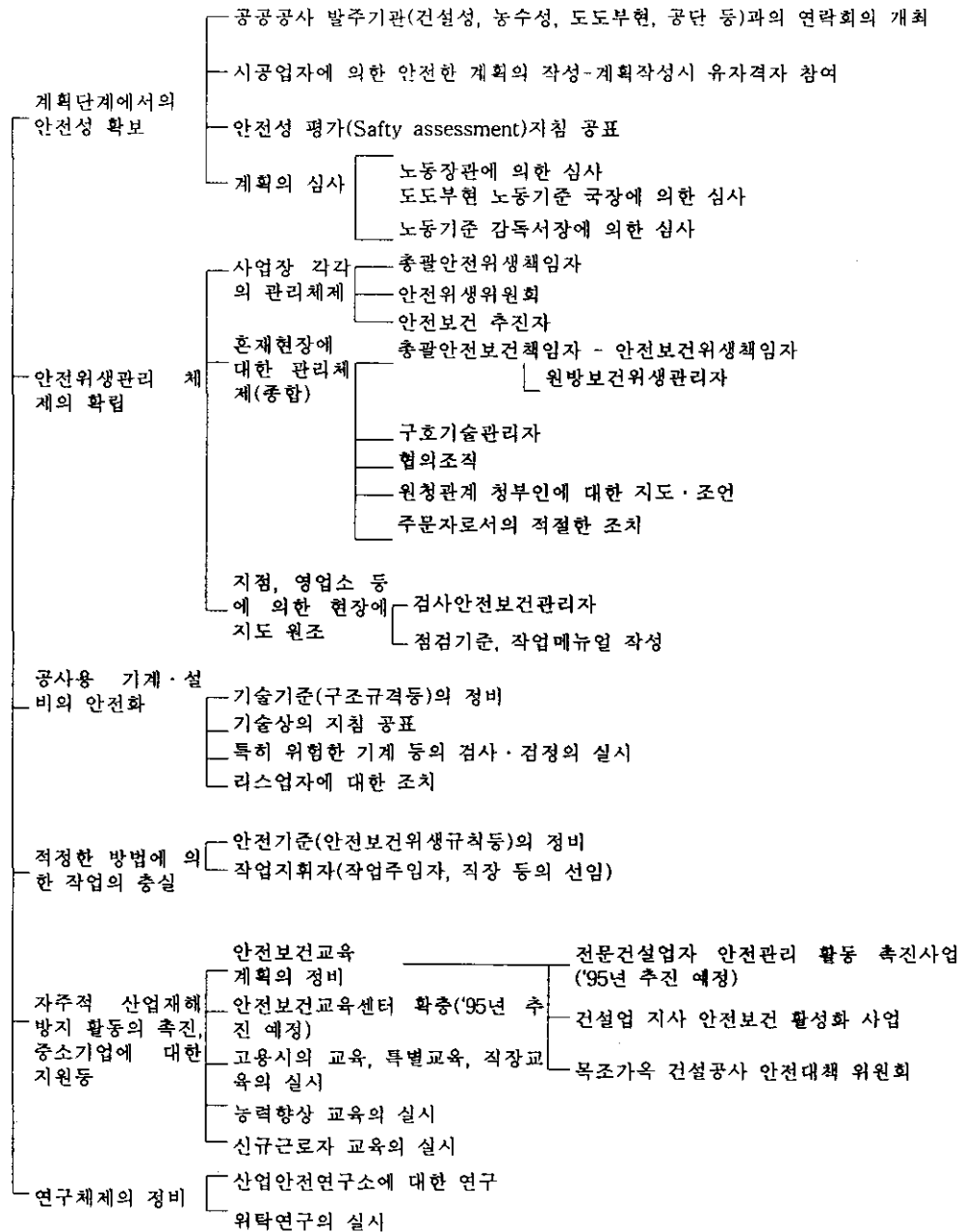
라. 教育訓練制度

- 일본의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체계적이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 공사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계층별 및 기능별로 안전관련 업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업무 담당자 모두에 대하여 공종별 및 계층별로 소요자질을 규정하여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음.
- 공사현장 요원중 특히 작업주임자 및 직반장의 안전책무와 자격요건을 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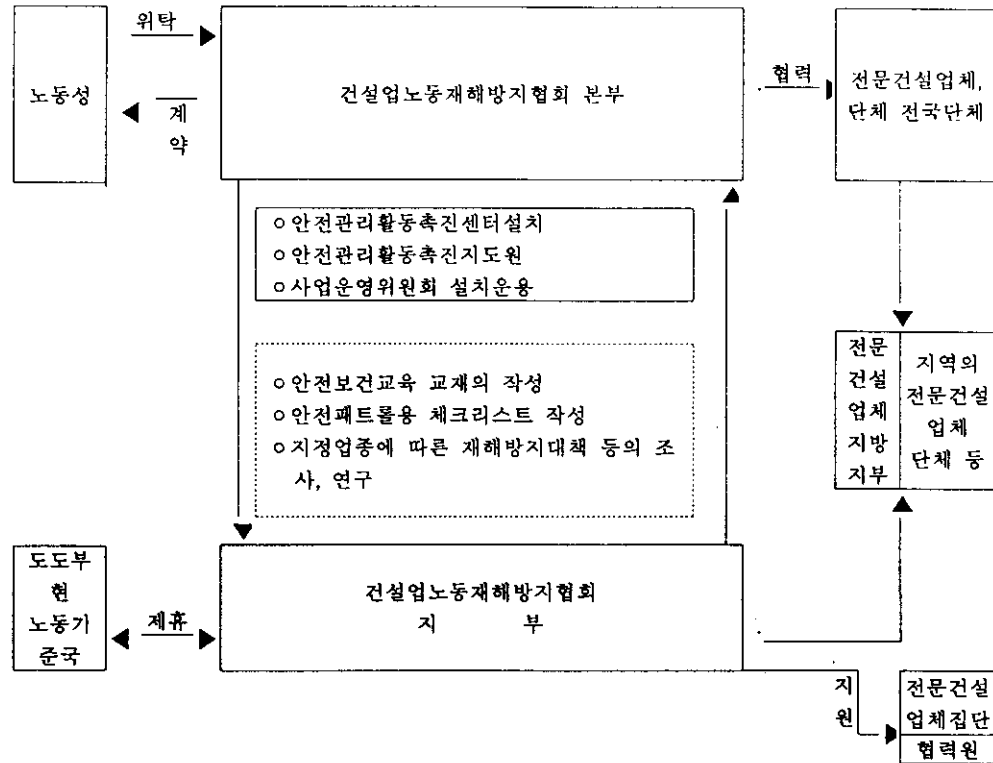
하게 규정하여 현장일선에서의 안전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 현장근로자의 경우 일정 작업의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후라야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안전보건교육 관련법령이나 실시규정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하위법령 및 지침에 교육대상자별로 교육과목과 내용 및 소요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교육의 실시나 유자격자에 대한 검정업무는 정부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모두 민간단체에게 맡기고 있음.
 - 민간단체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 교육강사도 건설업체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지향의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 일본의 교육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분야별로 교육훈련강사의 양성과정을 많이 개설하여 사내안전보건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점인데, 조직의 안전수준이 안전전문가의 수준에 좌우되어 안전전문가의 수준향상이 불가결하듯이, 강사양성 과정은 안전보건교육의 질을 높이는 관건으로 판단됨.

[그림 3] 일본의 건설안전대책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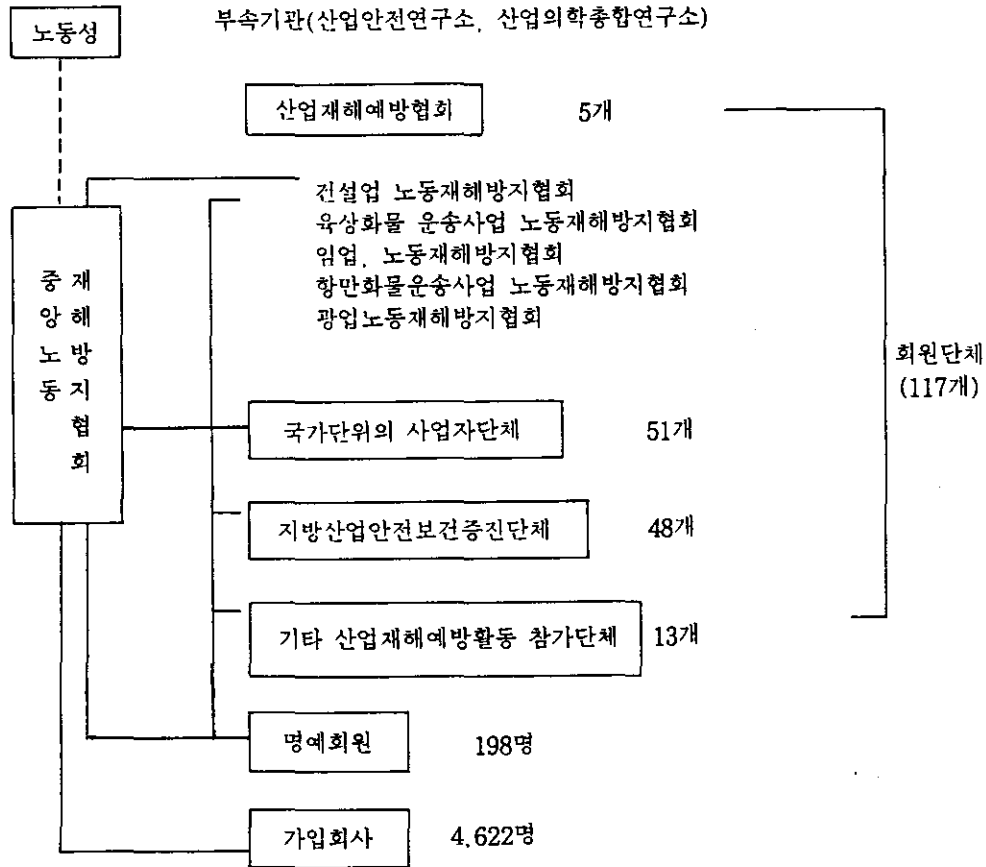
[그림 4] 일본의 전문건설업체 안전관리촉진사업 실시체제



- Safety Management Plan Development Seminar
- Manager Safety and Health Seminar
-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mplementation
- Safety Checklist Implementation
- Individual Safety and Health Guide Implementation
- Cooperation Unit Participation in National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Management Promotion Conference

- Safety Management Plan Development
- Manager Safety and Health Seminar Participation
-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ttendance
- Safety Checklist Participation
- Individual Safety and Health Guide Results-based Measures Implementation, National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Management Promotion Conference Participation

[그림 5] 일본의 산업재해예방 체제



7. 獨逸의 建設産業安全關聯制度

가. 事業場 安全管理者 選任

-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 안전보건 조직에 관한 법 (ASIG)」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사업의 종류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위험 및 건강위험, 종업원수 및 작업의 종류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상세한 사항은 업종별로 사업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산재예방규정 (VBG12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ASIG)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과 연계하여 법 제6조에 명시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안전기사, 안전기능사, 안전마이스터)를 임명하여야 함.

1. 사업의 종류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위험 및 건강위험
2. 종업원수, 사업장 내의 작업의 종류별 인원수
3. 특히 산업안전보건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수 및 종류의 관점에서의 사업장 조직
4. 사업주의 지식과 교육, 또는 산업안전보건법(1996년 8월 7일 제정) 제13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안전보건관련 책임자들의 지식과 교육

나. 事業場 安全管理者에 대한 産災豫防規定(VBG122)

— 土木業 産災保險組合(Tiefbau-BG) —

- 토목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기준이 사업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토목업 산재예방규정(VBG122)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음.

제1조(적용범위)

본 산재예방규정(VBG122)은 제2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된다(토목업 산재보험조합에 가입한 사업주를 말함).

제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 (1) 사업주는 사업장안전보건관리조직에 관한 법(ASIG) 제6조에 명시한 안전관리자의 임무를 인지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서면으로 선임하든가 또는 서면으로 임무를 주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최저한의 전담업무 투여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 사업장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최저한의 업무투여시간(토목업분야)

업무종류	사업장에 고용된 평균 근로자수(명)	안전관리자의 업무투여시간 (시간/년 · 인)
제1그룹 평균위험도 1~6.0인 업무	1~100명 101~200명 201~500명 매 500명 추가때마다	3.00 추가로 2.25 추가로 1.75 추가로 1.25
제2그룹 평균위험도 6.1~10.0인 업무	1~100명 101~200명 201~500명 매 500명 추가때마다	4.00 추가로 3.00 추가로 2.25 추가로 1.50
제3그룹 평균위험도 10.1 이상인 업무	1~100명 101~200명 201~500명 매 500명 추가때마다	5.00 추가로 3.75 추가로 2.75 추가로 1.75

(2) 사업주는 연간 정기적으로 최소한 160시간 이상을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사례 1 : 사업장 A

- 종업원 285명
- 사업장 평균위험도 8.2

→ 제2그룹에 해당

안전관리자의 최저 투여시간

1~100명	100×4.0	=	400 시간/년
101~200명	100×3.0	=	300 시간/년
201~500명	85×2.25	=	191.25 시간/년

계 891.25 시간/년

제3조(안전관리자의 전문지식)

(1) 사업주는 제2~3항 및 제4항에 규정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자를 안전관리

자로 선임할 수 있다.

- (2) 다음의 자를 Safety Engineer(안전기사)로 선임 또는 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1. Engineer이면서
2. Engineer로서 최소한 2년 이상 현장의 실무에 종사하였으며
3. 국가기관 또는 산재보험조합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안전공학을 전공한 Engineer는 최소한 1년 이상 현장의 실무에 종사하였으면 앞의 조건들을 충족시킨 것으로 갈음한다.

- (3) 다음의 자를 Safety Technician(안전기능사)으로 선임 또는 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1. 국가에서 인정한 기능사시험에 합격하고
2. 그 후에 최소한 2년 이상 Technician으로 현장실무에 종사하였어야 하며
3. 국가기관 또는 산재보험조합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국가에서 인정한 기능사 시험을 보지 않은 Technican으로서 Safety Meister(안전마이스터)로 최소한 4년 이상 종사한 자는 앞의 조건들을 충족시킨 것으로 갈음한다.

- (4) 다음의 자를 Safety Meister(안전마이스터)로 선임 또는 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1. 마이스터 시험에 합격하고
2. 그후에 최소한 2년 이상 마이스터로서 현장실무에 종사하였어야 하며
3. 국가기관 또는 산재보험조합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마이스터 시험을 보지 않았으나 마이스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최소한 4년 이상 현장실무에 종사한 후 국가기관 또는 산재보험조합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는 앞의 조건들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다. 建設部門 安全管理者 教育訓練過程(獨逸 Wuppertal地域 建設部門 産災保險組合, Bau-Berufsgenossenschaft Wuppertal))

1) “건설부문 안전관리자 기초교육과정 A (A1, B1T1, B1T2, AS)”

- ① 안전관리자 기초교육과정 A1 (2×5일)
- ② 안전관리자 기초교육과정 B1T1 (5일)
- ③ 안전관리자 기초교육과정 B1T2 (5일)
- ④ 안전관리자 기초교육과정 AS (5일)

2) “건설부문 안전관리자 전문교육과정 FASi/F”

- ① 안전관리자 전문교육과정 “고층건물 건설안전” (FASi/F4.1: 2.5 일)
- ② 안전관리자 전문교육과정 “지하작업/도로건설의 건설장비 안전” (FASi/F4.2: 2.5 일)
- ③ 안전관리자 전문교육과정 “지하터널, 지하갱도 건설안전” (FASi/F4.3: 2.5 일)
- ④ 안전관리자 전문교육과정 “건물·구조물 파괴시 안전” (FASi/F4.4: 2.5일)
- ⑤ 안전관리자 전문교육과정 “건물청소-수작업 안전” (FASi/F4.5: 2.5일)
- ⑥ 안전관리자 전문교육과정 “페인팅 작업자, 부식방지용 안료 페인팅 작업자 안전”(FASi/F4.16: 2.5일)
- ⑦ 안전관리자 전문교육과정 “건물부속설비작업자, 지붕작업자 안전” (FASi/F4.7: 2.5일)

8. 英國의 建設産業安全關聯制度

가. 關聯法令 및 機構

- 영국의 건설안전 관리제도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HSWA(1974), MHSW (1992), CDM(1994), CHSW(1996) 등이 있음.
- 정부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규제감독체제는 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안전보건위원회(HSC)와 집행기관인 안전보건청(HSE) 및 지방조직이 있음.
- 건설사업장 내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시행중인 CDM제도를 중심으로 안전계획감독(Safety Planning Supervisor)이 있음.

나. 政府監督制度

-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일원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감독기관도 일원화되어 있어 일관되고 강력한 산업안전정책의 집행과 감독을 가능케 하고 있음.
 - 감독인력도 비교적 충분한 편이며, 감독의 권한이 커서 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할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벌칙은 주로 벌금형으로 경제적인 유인책으로 활용되고 있음.
 - 벌칙의 강도도 대단히 높아 HSWA의 고의적인 위반시에는 무제한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병과할 수 있어 규제의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도 HSC의 정책수립기능과 HSE의 정책집행기능을 분리시키고, 정책수립기능에는 현업에 밝은 산업별 실무위원회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제로 규정이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감독인력의 활용에 있어서도 지역특성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감독관을 배치하거나 활용함으로써, 건설전문직 감독이 극소수로서 지도기능이 미흡한 우리나라에 비해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와 감독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이상적인 감독방식으로 사료됨.

- 영국의 산업안전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MHSW와 같이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독려하는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어 산업안전의 원리인 '관리상의 결함'의 제거에 충실하여 재해예방노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있어서도 감독과 연구개발 등 정보의 개발만을 정부에서 담당하고 실무적인 안전활동은 대부분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민간의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촉진시키고 있음.
- 특히 정부기관에 의한 각종 규정의 개선과 사업장에 유용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은 정부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기능으로 되어 있음.

다. 建設事業場 安全管理體制

- 건설공사의 수행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상위권자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CDM이라는 건설사업장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 시행하여 시공사위 주의 기존 건설안전관리체제를 혁신하였음.
- 본문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도 법규 위반시는 벌금형 등의 벌칙을 가하여 위로부터 안전을 독려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정책수단을 집중함으로써 영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건설업의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의 건설안전관리체제도 기존의 시공회사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중심의 체제로부터의 변환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라. 建設安全教育制度

- 영국의 안전관련 법령은 대부분 목표지향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구체적인 법령의 준수방법은 사업장에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 안전교육에도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전에 공사참여자 각각의 위치에서 필요한 자질을 먼저 천명하고
 - 이러한 자질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음.

<표 9> HSWA 1974의 주요 내용

제2절(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의무)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복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제3절(당해 사업장 근로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대한 사업주의 일반의무)

·사업주는 고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해 사업장의 작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제5절(대기방출에 관한 구내 관리자리의 의무)

·구내관리자는 누구나 인근대기에 해로운 혹은 불쾌한 물질이 분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실질적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절(작업현장 사용을 위한 설비와 물질에 관한 제조업자의 의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안전하고 보전에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품목이 설계되고 제조된 것을 실무화되도록 해야 한다.

제7절(현장 작업자들의 일반의무)

·사업주는 자신은 물론 현장에서 자신의 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의 안전보건을 위해 합리적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주 혹은 다른 사람과 협조해야 한다.

제8절(안전을 위해 공급된 제품의 불간섭 혹은 오용금지)

제18절(시행)

·산업안전보건청으로부터 파견된 안전감독관은 작업을 중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32절(벌칙)

·회사나 개인에 무제한 벌금 혹은 최고 2년의 징역 혹은 두 가지 전부

<표 10> MHSW 1992의 주요내용

규정 3 : 위험성 평가

- 사업주는 작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및 제3자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시 중요한 발견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규정 4 : 산업안전보건 조치

-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담당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다른 목적을 위해 관리시스템으로 통합시켜야 한다.
- 일반적인 조치는 다른 관리기능을 대표적으로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계획, 조직, 통제, 감시 및 검토

규정 5 : 보건감시

- 위험성 평가(규정3)는 보건감시가 구체적인 안전보건규정 즉, COSHH(보건유해물질관리)에 의해 필히 주변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규정 7 :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에 대한 조치

- 유자격자의 역할과 책임을 설정해야 한다. 즉, 현장관리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그들이 비상시 취해야 하는 조치들에 관한 작업인력들에 대한 교육, 즉 피난절차를 교육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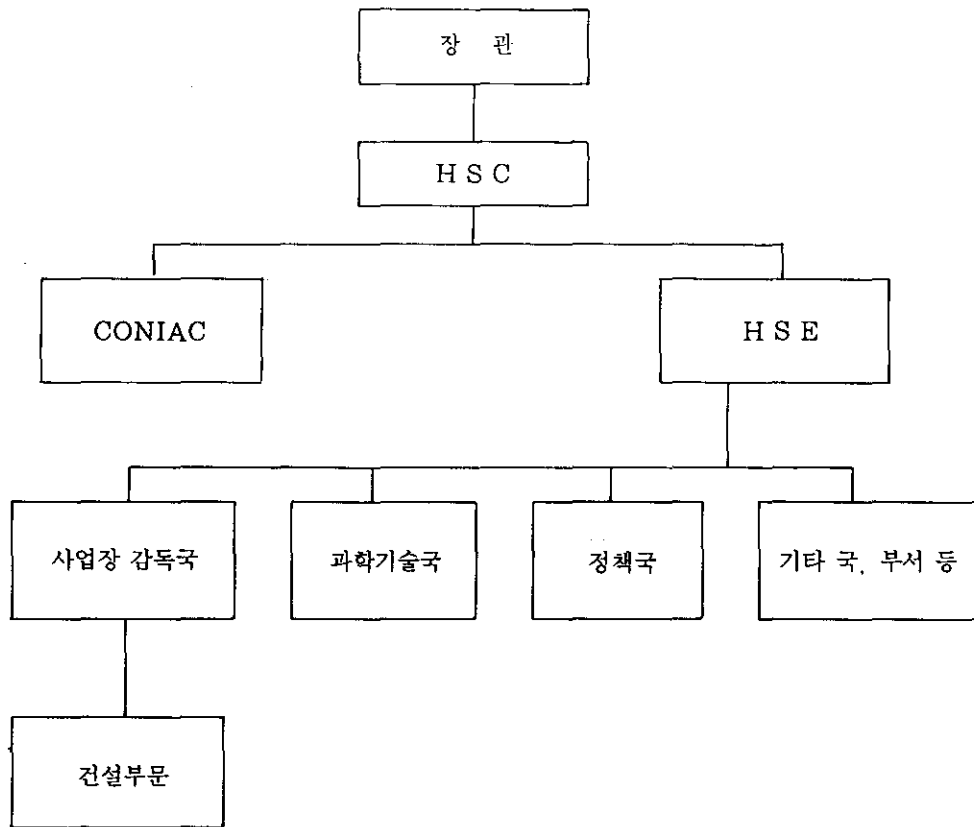
규정 8 : 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위험평가(규정3)는 작업인력에 제공되는 정보, 즉 방진마스크, 물질사용, 밀폐 공간작업 등의 정보를 확인토록 협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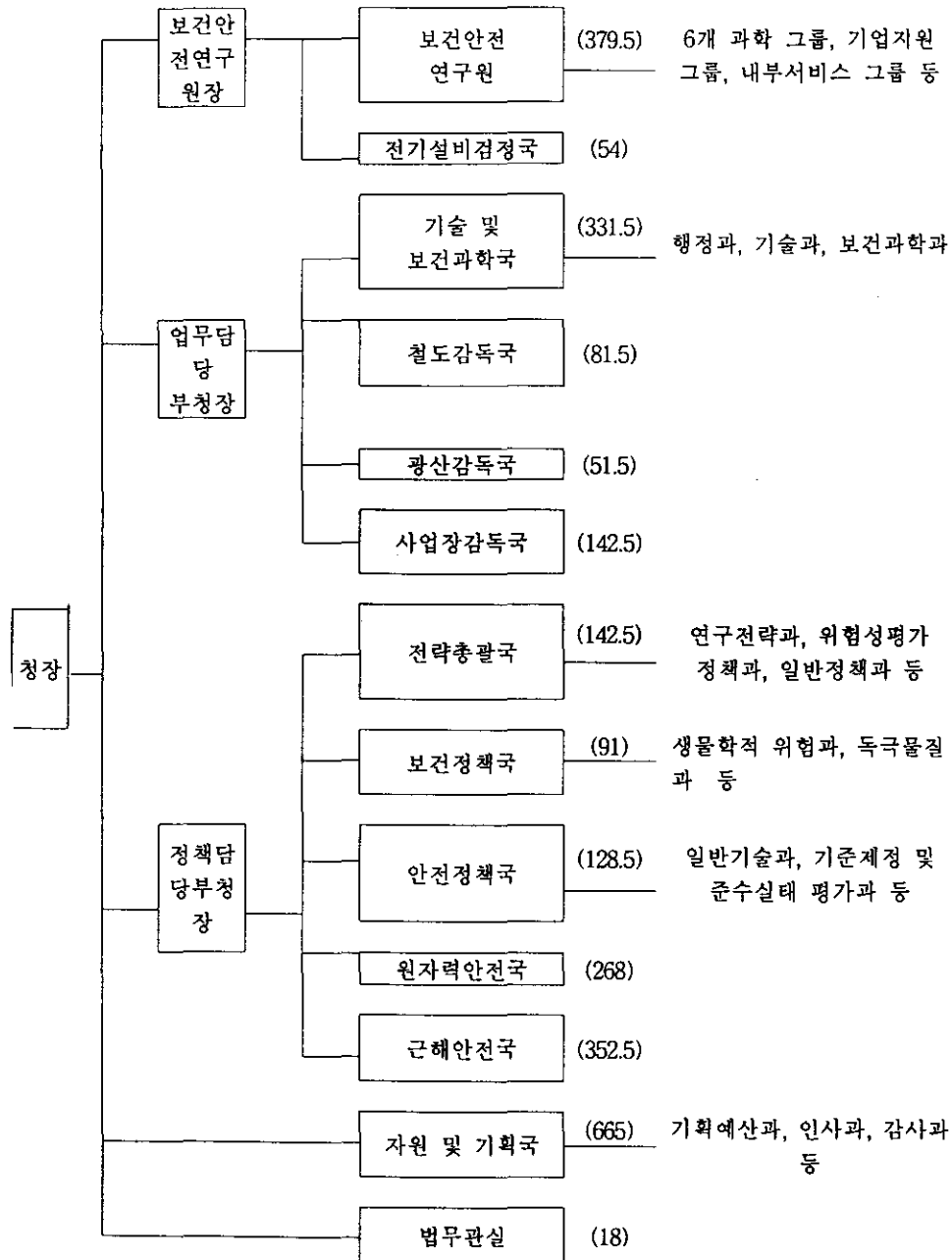
규정 11 : 자질 및 훈련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할당할 때 작업수요가 자신 혹은 타인에게 위험 없이 당해 작업을 실행하는 데 역부족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추가 훈련이 필요하면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그림 6] 영국의 건설사업장 감독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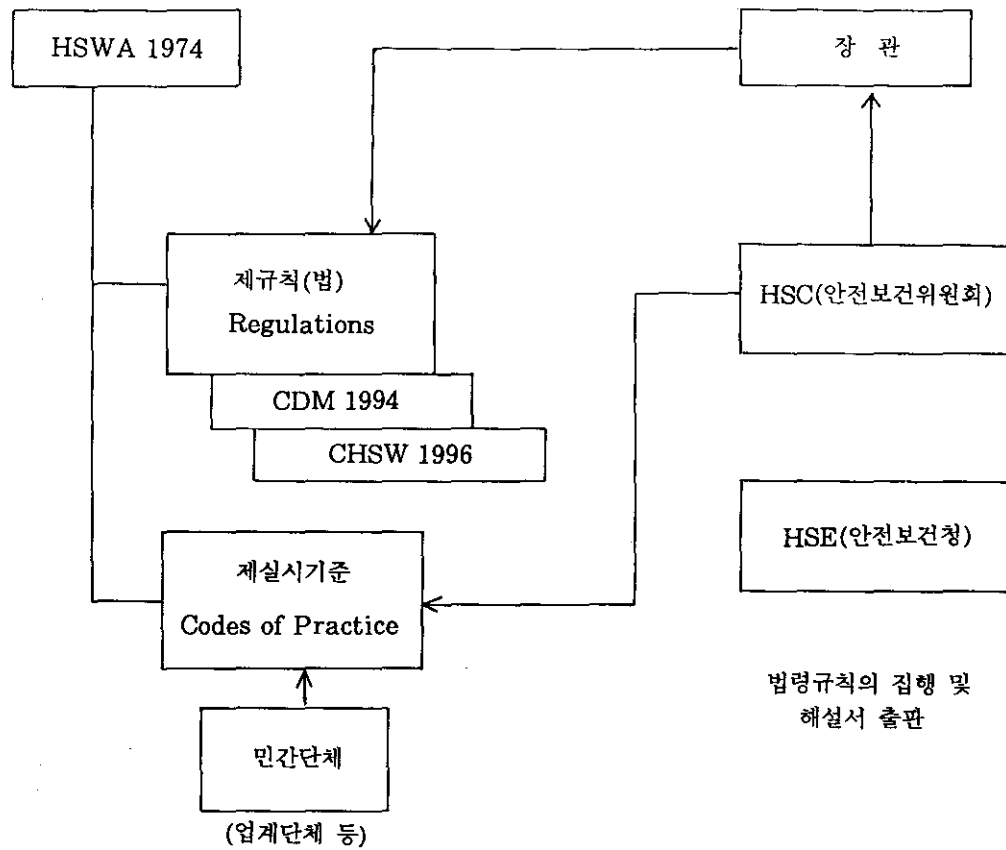


[그림 7] HSE의 조직 구성



주) ()안은 인원수임.

[그림 8] 영국의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 규제 구조



9. 美國의 建設産業安全關聯制度

— 建設安全關係者を 中心으로 —

가. 問題의 提起

- 미국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근로자 재해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Law) 에 의거해 사고발생시 재해보상이라는 경제적 차원에서만 접근해 왔음.

○ 그러나 1970년 직업안전보건법(OSH Act)이 제정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에 실패했을 경우 소환장을 받거나 벌금형이 부과되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가 경제적 문제외에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까지 동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됨.

○ OSHA 법 제5A장은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혹시라도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작업장소나 근로자들을 배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나. 關聯法規

1) 職業安全保健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

○ 1970년 12월 29일 닉슨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제정· 공포된 세계최초의 종합 안전보건법으로 “미국내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확보해 주고 인력자원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갖고 법의 집행과 기술적 지원을 위해서 이 법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과 국립안전보건연구원(NIOSH: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이 설립되었음.

○ 근로자 1인 이상의 각 주정부간의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가사사용인, 자영업자), 군인 등을 제외하고 석탄광업안전보건법, 연방금속비금속안전법과 같은 타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과 연방·주지방정부 공무원들은 별도로 공무원 고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 전문 31개 조로 구성되고 하위 규정으로 미 연방규칙 제29장(29 CFR)에 공통기준, 조선업, 해양터미널, 항만작업, 건설업 및 농업에 관한 안전보건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연구, 교육 및 법 집행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작업장 내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보건프로그램을 이행토록 독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연구 및 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방안의 개발
- 향상된 안전보건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책임과 권리를 부여
- 작업관련 부상과 질병을 감시하기 위한 보고 및 기록보존체계 유지
- 산업안전보건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수립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적 기준의 개발과 집행
- 주정부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개발, 분석, 평가 및 승인

○ 특별히 건설안전관계자에 관련한 규정은 발견할 수 없으나 이를 의미하는 조항이나 문구들은 많이 발견할 수 있음. 이들 중 중요한 규정들(29 CFR 1926.32)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음.

- (d) 공인된 요원이란 사업주로부터 특수한 장소에 근무하거나 특수한 임무이행자로 지정되거나 인정된 자로...
- (f) 자격있는 요원이란 근로자들에게 비위생적이고 유해위험한 작업조건과 주변상황에서 상존하는 위험을 구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들 상존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즉각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로서....
- (i) 지정된 자는 이 장의 (d)항에서 정의한 ‘공인된 요원’ 을 의미하며...
- (m) ‘자격있는 자’ 의 의미는 인정된 학위, 자격증 또는 전문적 위치에 있는 자로서, 또는 포괄적인 지식, 교육훈련 및 경험에 의해 사안, 작업 및 사업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2) 主要 建設安全關聯規定

○ 산업안전보건 기준(OSHA Standards):

기준은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을 제공하기 위해 한 가지 이상의 방법, 작업절차, 공정 등을 요구하는 규정이며 이는 일반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평적 기준과 건설, 조선업 등 특정사업장에 국한, 적용할 수 있는 수직적 기준으로 대별됨. 미국은 건설관련부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근로자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하여는 노동성 산하의 직업안전보건청(OSHA)과 질병예방센터 산하의 국립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있음. 다음은 주요 관련기준들임.

- 29 CFR 1910 일반산업기준 및 해석(농업부문 포함)
- 29 CFR 1915 조선업 안전기준
- 29 CFR 1917 하역부두, 연안어업 안전기준
- 29 CFR 1926 건설안전기준

○ 기타 관련기준 :

미국 산업안전기준은 크게 일치기준, 독점기준 및 연방법 근거기준으로 나눌 수 있음.

다. 建設關聯 安全專門家の 役割

1) 安全部署長(Safety Director)

○ 안전부서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음.

- 안전조직을 관장하고 적정한 참모를 선발하고 관련사항을 전달
- 모든 스텝과 관계자에 적절한 정보와 교육훈련
- 응급처치, 복지시설 제공
- 안전보건 및 복지관련 다음 회계연도 예산계획 수립과 집행관리
- 상해사고, 질병 및 위험상황 발생보고에 관한 책임
- 모든 설계, 건설 및 관련활동의 안전대책 시기와 비용보장
- 안전위원회에 적정수준의 임원이 참석토록 하고 토의된 문제들에 대한 결

과조치 등

2) 建設現場 安全管理者(Safety personnel)

- 원도급업체와 비교적 규모가 큰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들로 공사의 규모나 작업의 성격에 따라 전담 또는 비전담으로 나뉨.

라. 安全을 考慮한 設計決定

- 책임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많은 설계사들이 설계결정시에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음. 이는 설계-건축 또는 설계·건설회사와 같이 건설회사에서 설계업무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틀림없는 사실임.
- 이러한 회사들은 설계에서 근로자안전을 고려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곧 그들이 시설물을 건설할 때 그들의 소속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됨.

10. 國際勞動機構(ILO) 建設安全 關聯事項

가. 建設安全保健關聯 基準의 種類

- ILO가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건설안전보건기준과 원칙은 건설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약(167호, 1988년)과 권고(175호, 1988년)에 잘 나타나 있으며 ILO 건설안전보건실행지침(Code of Practice on Safety and Health in Construction, 1992)에 ILO가 요구하는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음(앞으로 협약, 권고, 실행지침이라 함은 앞에 언급한 기준을 뜻함).

- 협약전문에는 건설안전보건과 관련한 협약으로 건축(빌딩) 안전규정 협약과 권고(1937년), 건축(빌딩) 재해예방 협력권고(1937), 방사선보호 협약과 권고(1960), 기계방호 협약과 권고(1960), 최대중량 협약과 권고(1967), 직업성 암 협약과 권고(1974), 작업환경(공기오염, 소음, 진동) 협약과 권고(1977), 산업 안전보건 협약과 권고(1981), 산업보건서비스 협약과 권고(1885), 석면 협약과 권고(1986), 1964년의 고용상 상해급부 협약에 첨부된 1980년 개정 직업병 명단 등을 들고 있음. 또한 동 협약과 권고는 “1937년 안전규정(건축, 빌딩)을 개정한 기준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 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1988년 이후에 채택된 화학물질 사용안전 협약과 권고(1990)가 관련되며, 직업병 분류 역시 최근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기록과 보고 실행지침(1997)에 첨부된 직업병 분류가 보다 최근 내용임.
- ILO가 제시하는 —전세계 정부, 노사단체가 합의한— 건설안전보건 국제기준은 건설안전 협약과 권고와 동 기준 내용을 구체화시킨 건설안전보건 실행지침에서 체계적으로 잘 언급되어 있고, 일부 관련항목(예, 근로자 보건, 기계기구, 작업환경 등)의 경우는, 관련 협약과 권고(협약전문에 언급), 실행지침, 가이드 등에 보다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음.

11. 우리나라 建設産業安全制度의 改善方案

가. 建設工事 安全管理體制 改善方向

-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은 제도 정착과 효율적 운영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건설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안전관련의 두 축인 건설교통부와 노동부에서의 건설안전업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 노동부의 건설재해 방지의 주목표는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명 안전으로서 이를 위한 안전과 보건에 대한 규제 및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음.
 - 건설교통부의 건설안전관련법은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감독·감리제도나 설계심의, 그리고 안전점검을 고려하는 것임.

-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설공사 안전관리의 범위는 (건설구조물 시공시 작업장 내에 근로자의 안전확보뿐만 아니라 근로자와는 전혀 무관한 인접한 구조물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통행인, 그리고 완공후의 유지관리까지 확대)되어야 함.

- 그러므로 건설안전에 대한 건설교통부와 노동부의 기능은 2원화 되어있지만 각각의 기능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긴밀한 협동체제의 유지가 필요하며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소관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며 앞으로는 종합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교부 관련 법령은 공사의 품질과 구조적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에 집중을 두고,
 - 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건설안전관련제도 및 규제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통일하여 자율적 예방활동으로 전환하고 사전규제 보다는 잘못된 결과에 대해 업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 산안법상 건설관련사항을 보완하고 체계화하여 건설업체에 독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생각됨(가칭 건설안전보건법 등).

- 이는 가장 이상적인 안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부처간의 업무협조 및 조정 여부에 따라 효율성의 문제가 결과로 대두될 것임.

나. 建設工事 安全管理制度 補完方向

-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방법은 규제, 혜택과 수준향상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따라, 현재 각 정부기관에서 관계법령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있는바,
 - 앞서 언급한 법령의 정비는 효율적 제도의 집행과 일관된 정책을 위해서 중요하나,
 -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기존 제도 및 법령 내에서의 통합개념에서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의 보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1) 制度內에서의 補完

- 설계단계시 안전조치의 참여방안
 - 건설프로젝트의 전개과정을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사용단계로 구분할 경우 기획단계와 설계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은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품질이나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특히 계획이나 설계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은 시공단계에 비하여 비용이 발생은 적으면서도 프로젝트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큼.
 - 따라서 계획과 설계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면 시공과정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로 인한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입찰제도보완(안전부분의 가산점 및 하도급계열화 및 안전관리제도 우수업체의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가 등)
 - 자율안전과 계속적 안전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각 건설사의 무재해운동의 누적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보완
 - 안전보건관리 규정제도에서 안전활동에 대한 평가기능을 부여
 - 도급사업의 안전조치의무 강화

- 공사재해관련 기록의 보완

○ 건설안전관리 조직의 정비

- 산안법상의 현장 안전관리자와 건교부 법령상의 감리자의 협조체제의 구축과 감리제도의 개선(안전부분의 강화)과 이에 따른 안전예방조치 요청서 등의 보완.
-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 대부분이 서류상의 선임이고 건설업 특성의 중층하도급관계이므로 공사협력업체의 경영자들 외에는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 및 위상을 제고하여야 함(감리자와의 업무보완 등).
- 건설공사의 라이프 사이클을 총체적으로 포괄하여 공사 각 단계간에 안전 개념이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맥되는 데 중요한 부분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도의 내실화(공정별 표준안전작업 모델 개발, 공사종류별 안전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과 감리자들의 참여 및 확인단계의 절차마련 등)

- 작업순서, 작업별로 투입되는 장비의 취급상 특성과 위험요소, 가시설의 적정성 검토, 예상되는 위험요소, 공정별로 투입되는 인원의 숙련도와 이들의 교육 및 보호조치사항 등과 수시 변화하는 현장 조건에 부응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조사 계획과
- 이에 수반되는 공법 및 제반 투입자원의 조정과 위험요소 도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전 안전성 검토가 감리자 등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 등.

○ 노동부 장관이 표준안전관리비에 대한 사용기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고 시행규칙에서 공사진행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공사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게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건설현장 및 공사 종류에 따른 차등적용 및 포괄적 비용지출이 가능하는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야 함.

- 그러므로 안전관리 계획이나 점검, 가시설의 설치나 설계에 대한 비용이 배려되어야만 실질적인 건설구조물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총공사비의 비율로서 책정함으로써 공사비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변동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적절히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하도급업체는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표준안전점검표의 작성모델 및 안전점검, 진단과 안전사고 조사의 보완

- 계획이나 설계과정시 고려해야 할 안전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한 표준안전점검표의 작성이 필요함.
-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조건 등에 따라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안전사항에 대한 항목 등에 사항과 예가 작성된 지침이나 편람이 마련된다면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이러한 안전점검표는 시설안전공단이나 진단전문기관과 같은 기관에서 진단하면서 분석된 설계상의 문제점들을 용도별·규모별로 제시한다면 설계자들이 계획이나 설계단계에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100억 이상의 공사는 공사착공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의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00억 미만인 건설공사라도 발주자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의한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안전점검이나 진단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안전진단은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 현장이라도 현장에서 진단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안전점검이나 진단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움.
- 건설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는 건설교통부, 노동부, 검찰청(경찰서) 등에서 자체 목적(건설교통부 : 부실공사 여부, 노동부 : 사고원인 조사, 검찰청 : 형사상의 입건 문제)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적으로 확

정하고 있음.

- 이들 조사는 각각의 조사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른 관계로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이들 안전사고들이 자료화 되지 못해서 통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유사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이 어려운 실정임.

2) 安全管理體制의 整備

- 노동부 내의 건설안전관련조직이 정비되어(가칭 건설안전과 등) 건설안전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관리되며 이와 같은 관리가 규제 및 처벌을 위한 행정위주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의 보완으로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종 및 공정별 기준의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기획 및 설계와 시공과정의 연속과정인 건설현장은 상호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시공단계는 마지막의 구체 실현단계이므로 건설산업의 전과정을 포괄하는 안전관리의 개념과 공사상류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보완
- 건설안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해예방 기술과 이에 따른 건설기술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고 또한 강조되어야 함. 기술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건설안전을 위해서는 계획, 설계와 시공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각각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함.

○ 건설안전관리 조직의 정비

- 산안법상의 현장 안전관리자와 건교부 법령상의 감리자의 협조체제의 구축과 감리제도의 개선(안전부분의 강화)과 이에 따른 안전예방조치 요청서 등의 보완.
-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 대부분이 서류상의 선임이고 건설업 특성의 중층하도급관계이므로 공사협력업체의 경영자들 외에는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 및 위상을 제고하여야 함(감리자와의 업무보완 등).

- 건설공사의 라이프 사이클을 총체적으로 포괄하여 공사 각 단계간에 안전 개념이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맥되는 데 중요한 부분임.

다. 下都給關聯制度의 問題點들에 대한 改善方案

1) 低價 下都給去來의 防止

○ 불공정 저가하도급의 방지 방안

- 첫째, 현재 30억원 이상(토목공사의 경우는 1억원 이상)인 건축공사의 입찰에 적용되는 부대입찰제를 확대·실시하여 수직적 하도급관계에서 원·하도급업체간 대등한 협력관계로 발전되도록 유도함.
- 둘째, 최적격 낙찰자 심사시 주요 공종의 하도급공사를 시공할 전문업체의 시공능력도 동시에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셋째, 현재 공종 구분없이 하도급 금액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발주처의 저가하도급심사제를 지양하고 발주처가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책임지고 운용토록 전환함.

○ 산재발생 및 부실시공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의 전환

- 첫째, 산재발생(안전설비 설치 미비 포함)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금액에 대한 원도급기업의 하도급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일부 제한을 부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에 대한 원도급 기업의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둘째, 공사중 사고와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사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함. 이때 보험의무가입자는 프랑스의 예(후술된 참고자료 참조)에서 보듯이 건설생산과 관련된 모든 자(건축가,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축부품 및 자재공급업자)로 하고 원인별로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 부담하도록 함.
- 셋째,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신용평가제를 도입하여 부실공사 여부, 신용상태 등에 따라 금융보증을 차등 지원하도록 함.

2) 下都給代金の支給遅延防止

-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 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의 유도과 어음할인료 지불을 제도화시켜 나가기 위한 공정거래 차원의 지도·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하도급법 이행상태가 좋지 않은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직권실태조사가 필요함.

-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액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에게는 이행본드—공사 미완료시 보증인이 계약이행비용 지불—와 지불본드—고용자, 하도급업자 및 자재공급자에 대하여 완료한 업무나 공급된 자재에 대한 대금 및 임금지급을 보증—를 납입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함.

3) 其他 不公正去來行爲 및 違法行爲 防止

-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한 부담전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포함시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함.

4) 非效率的인 中層的 下都給構造의 短縮

- 건설업자의 자격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 건설업자에 대한 정보(시공능력, 생산물의 품질상태, 재무상태, 기술개발, 인적 구성 등)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격심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수주 및 입찰시 그리고 PQ(사전심사제도) 시행시 기본자료로 삼도록 함.
 - 이를 통하여 특히 생산능력이 없는 불량부적격건설업자(건설브로커 포함)는 도태되도록 엄격한 적용이 요구됨. 심장 등은 법적·경제적 책임능력 있는 전문건설업자에 고용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
- 발주자와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
 - 현행 하도급구조에는 발주자와 원청업자의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발주자와 원청업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나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 등의 문제발생 원인이 발주자나 원청업자 등에게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이들에 강한 연대책임을 지게 하여 발주자나 원청업자 스스로가 합당한 하수급인의 선정·적정한 공사대금의 적시전달·원활한 공사진행 등의 감시자가 되도록 유도함.

라. 建設勤勞者の 福祉増進을 통한 建設産業安全 誘導

- 建設勤勞者退職共濟金制度를 中心으로 -

1) 制度의 趣旨 및 概要

○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퇴직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가급여는 기본적으로 개별기업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고 있음.

- 따라서 개별기업에 상시적으로 고용된 상용근로자는 당해 기업을 중심으로 각종 사회보장의 혜택은 물론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어느 한 기업에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못한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사회보장은 물론 퇴직금을 비롯한 기업내 부가급여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기업 내·외적 복지로부터의 소외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특징인 고용 및 소득불안정과 더불어 건설일용직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피와 현직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상실의 주된 원천이며, 나아가 산업재해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

○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재예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능한 건설기능인력의 확보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유인기제의 하나로서 부가급여 중 하나인 퇴직금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것임.

○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이하 '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부금

을 납부하며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지급함.

- 근로자가 현장을 옮기게 되어 사업주를 바꾸더라도 공제계약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한 근로한 일수분의 공제부금이 모두 합산되어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됨.

2) 加入對象・時期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각 사업장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공공·민간 공사를 불문함.

※ 의무가입대상공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에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에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하도급 포함)계약의 체결 또는 실제 공사착공일 즉시 가입하여야 하나 그외의 건설공사에 대한 가입시기의 제한은 없음.

○ 적용제외근로자

※ 퇴직공제금제도의 적용제외 근로자

1. 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건설근로자
2. 고용형태·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 ①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③ 부업으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 학생 등과 같이 부업으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자

3) 建設勤勞者退職共濟證紙의 種類 및 貼付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이하 '공제증지')의 종류는 2,000원인 1일권(무궁화 문양의 보라색)과 20,000원인 10일권(남대문 문양의 청록색)이 있음.
- 피공제자인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월 1회 이상) 근로일수분의 공제증지를 복지수첩에 붙이고 소인함. 다만,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함.

4) 退職共濟金의 受領

- 근로자가 건설일용직을 그만둔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이 지급됨.
 - 복지수첩에 공제증지 첨부월수가 12월분(21일을 1월로 환산함)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퇴직공제금이 지급됨.

※ 퇴직공제금의 청구사유와 이의 증명

청 구 사 유	필 요 증 명 서 류
·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관할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행한 증명
·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경우	· 사업주의 증명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사업주의 증명 또는 의사진단서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과 청구인 자격에 관한 증명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 관련 입증 서류

- 건설일용직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퇴직공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text{퇴직공제금} = \text{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 + \text{이자}$$

- 48개월 이상 근속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가산금 지급이 가능함.